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3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1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0. 11. 3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주택과장

가. 제안이유

고령의 비정규직 근무자가 대부분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주거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의 비용 지원과 인권교육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인용조항 정비(안 제3조)
- 2) 지원대상 추가 및 지원사업 범위 명확화(안 제4조)
- 3) 근로자 인권·복지 증진 규정 신설(안 제4조의4)

- 4)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신청 방법 명시(안 제5조)
- 5)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변경(안 제9조, 안 제11조)
- 6) 타 조례와의 관계에 따른 정비(안 제12조)
- 7) 법체계에 따른 개정(안 제13조, 안 제14조)
- 8) 지원금 지원기준에 신설 사업 추가 및 조문 내용과 일치(안 별표1)
- 9)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삭제 및 우선교부 순위 신설(안 별표1)

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한 사람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‘경비원 등 근로자’의 인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3조 적용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령에 맞게 인용하였고
- 안 제4조의4는 경비원 등 단지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제1항제1호과목 경비원 등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, 별표1 서식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상기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금 분담비율 7:3으로 규정하였음.

<표1. 공동주택 규모별 현황>

구 분	합 계	의무관리대상			임의관리대상			
		소계	분양	주상복합	소계	분양	임대	주상복합
단지수	220	98	86	12	122	92	14	16
세대수	70,008	53,098	48,900	4,198	16,910	8,006	7,467	1,437

※ 100세대 이하 77개단지

- 안 제5조 지원신청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 신청 방법에 있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,
- 안 제9조, 안 제11조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하고 위원장, 부위원장 간사 위촉에 있어서 위원장 부구청장을 소관국장으로, 부위원장 도시환경국장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간사를 업무담당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12조 수당은 회의 참석 구의원의 수당 지급을 제외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삭제하였음.
- 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2 ‘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’은 상위법령 의무사항으로 당연시 되는 부분과 비현실적인 평가 항목으로 지원금의 조정 기능만 있어 삭제하고 대신 ‘공동주택별 지원금 우선교부 순위’를 신설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의 폭행·사망사고²⁾ 이후 공동주택 경비원의 갑질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·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이해됨.
- 상위법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한 ‘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’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,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.
- 따라서,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·복지 증진 차원의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, 이러한 노력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됨.
- 기타 ‘위원회 운영관련 위원장 조정’ 과 ‘구의원 수당 지급 제외’, ‘공동주택 지원금과 관련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기준 삭제’ 는 행정권의 발동 여부 또는 행동 선택의 자유 및 판단의 자유를 집행부서에서 펼친 활동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2) ‘주민 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…경비초소 분향소엔 주민 추모물결’, 연합뉴스(2020.5.11.)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수정안 불임)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